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및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및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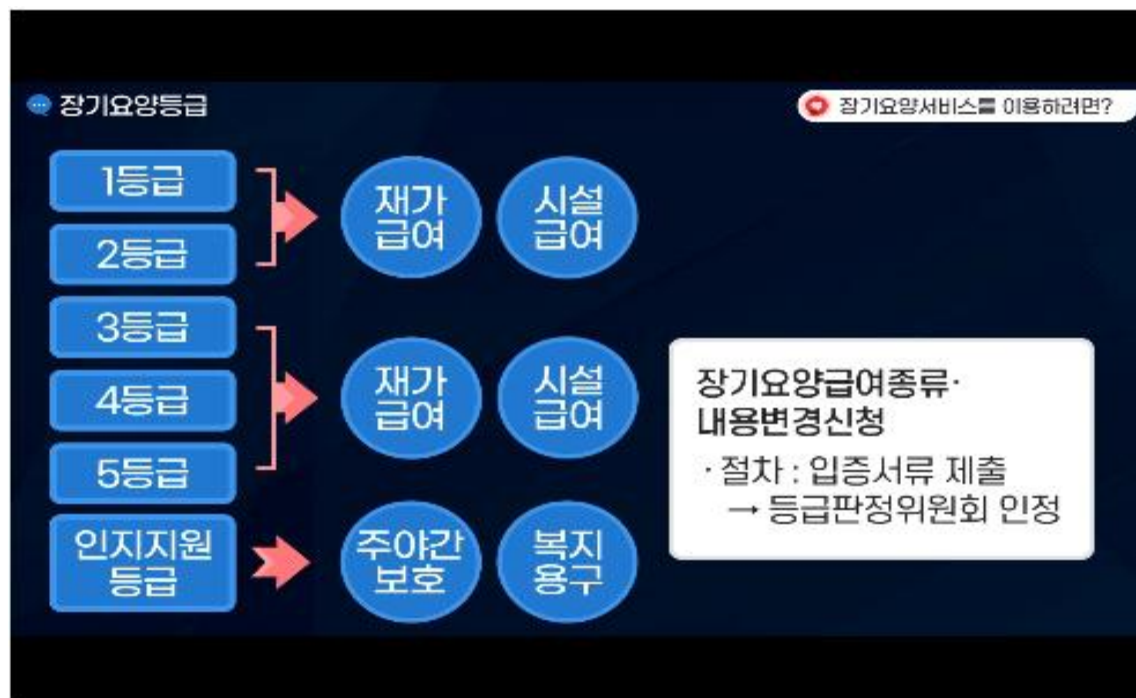
- 만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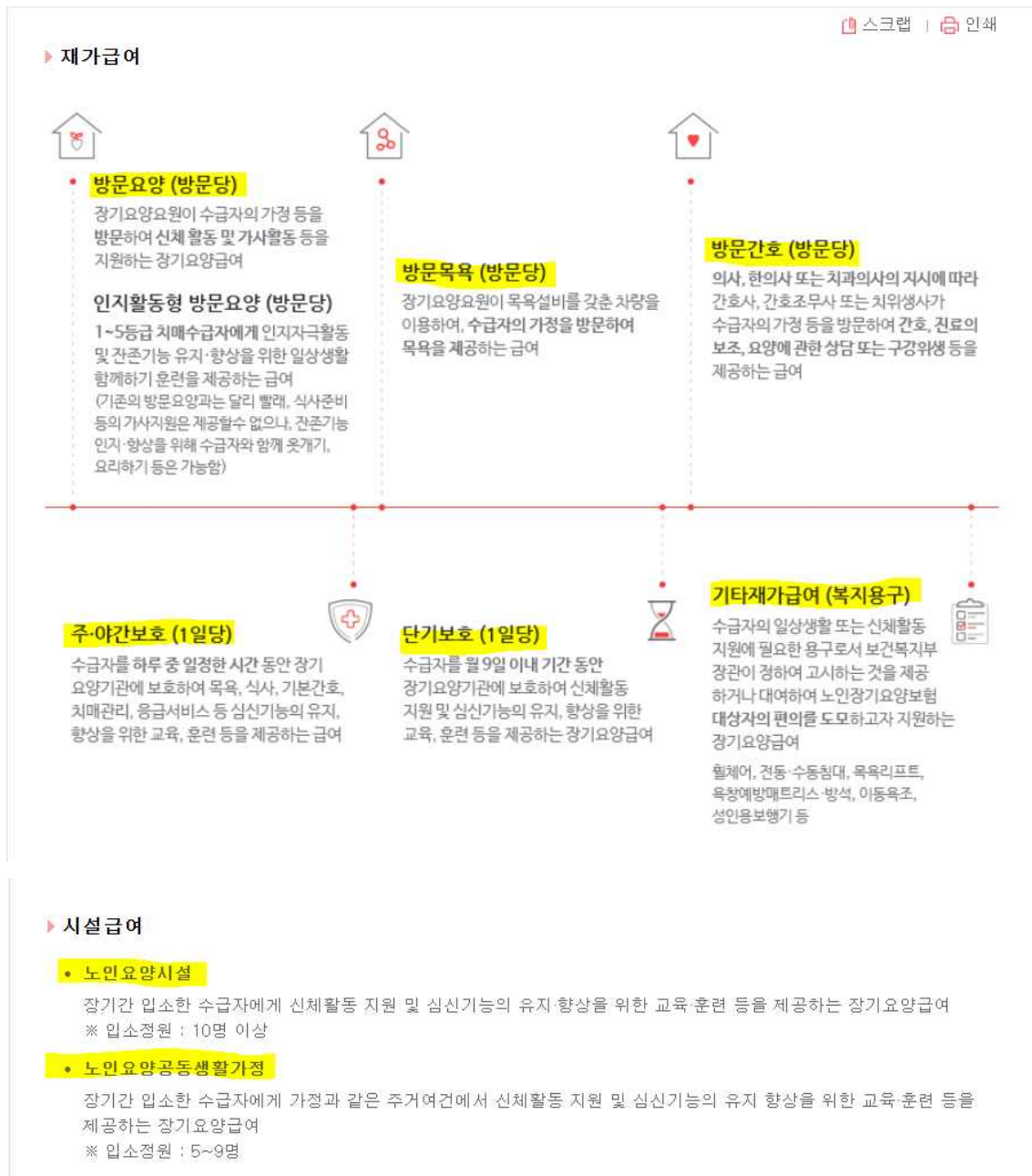


◎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서비스



* 3~5등급 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음.

◎ 급여종류 및 내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년)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요양 시간당 급여비용

시간	금액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8,990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80,230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50,100
차량 미이용 40분 이상	40,080
방문간호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단기보호(1일당)

분류	금액
1등급	74,060
2등급	68,580
3등급	63,350
4등급	61,680
5등급	60,000

시설급여(1일당)

분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93,070	74,590
2등급	86,340	69,210
3등급	81,540	63,800
4등급	81,540	63,800
5등급	81,540	63,800

주간보호(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구분	시간	금액	최대횟수	사용금액	본인부담		
					15%	9%	6%
1등급	120분 이상	43,430	57	2,475,510	371,320	222,790	148,530
	150분 이상	50,640	49	2,481,360	372,200	223,320	148,880
	180분 이상	57,020	44	2,508,880	376,330	225,790	150,530
	210분 이상	63,530	39	2,477,670	371,650	222,990	148,660
	240분 이상	70,080	35	2,452,800	367,920	220,750	147,160
2등급	120분 이상	43,430	53	2,301,790	345,260	207,160	138,100
	150분 이상	50,640	46	2,329,440	349,410	209,640	139,760
	180분 이상	57,020	40	2,280,800	342,120	205,270	136,840
	210분 이상	63,530	36	2,287,080	343,060	205,830	137,220
	240분 이상	70,080	33	2,312,640	346,890	208,130	138,750
3등급	120분 이상	43,430	35	1,520,050	228,000	136,800	91,200
	150분 이상	50,640	30	1,519,200	227,880	136,720	91,150
	180분 이상	57,020	26	1,482,520	222,370	133,420	88,950
	210분 이상	63,530	24	1,524,720	228,700	137,220	91,480
	240분 이상	70,080	21	1,471,680	220,750	132,450	88,300
4등급	120분 이상	43,430	32	1,389,760	208,460	125,070	83,380
	150분 이상	50,640	27	1,367,280	205,090	123,050	82,030
	180분 이상	57,020	24	1,368,480	205,270	123,160	82,100
	210분 이상	63,530	22	1,397,660	209,640	125,780	83,850
	240분 이상	70,080	20	1,401,600	210,240	126,140	84,090
5등급	120분 이상	43,430	27	1,172,610	175,890	105,530	70,350
	150분 이상	50,640	23	1,164,720	174,700	104,820	69,880
	180분 이상	57,020	21	1,197,420	179,610	107,760	71,840
가족케어	60분	25,320	20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	34,120	30	1,023,600	153,540	92,120	61,410
			31	1,057,720	158,650	95,190	63,460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목욕	금액	본인부담			방문간호	금액	본인부담		
		15%	9%	6%			15%	9%	6%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88,990	13,349	8,009	5,339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	6,432	3,859	2,573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80,230	12,035	7,221	4,814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	8,066	4,839	3,226
차량미이용 60분 이상	50,100	7,515	4,509	3,006	60분 이상	64,690	9,704	5,822	3,88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처. 다발경화증	G35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문의전화 : 031-757-1288 / 1289